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4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4**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법원행정처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펴내는 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도 하고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재판’이고 그러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 법원, 재판제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법, 법원, 재판제도라고 하면 막연히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법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청소년들이 법, 법원, 재판에 관하여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하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등 주제별로 구성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자를 통하여 인권과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법, 법원, 재판이라는 주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신 집필진 및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 우 중

세 계 의 법 원 과 재 판 이 야 기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법과 법을 실현하는 법원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고유의 법을 만들어 왔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모습 역시 각기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법과 사법기관을 가진 국가들이지만,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공통적일 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여러 나라의 법과 법원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나라의 판결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과 법원, 우리나라의 판결과 연계해서 법이란 무엇인지,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본 교재는 크게 ‘세계의 법과 법원 이야기’와 ‘세계의 재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세계의 법과 법원 이야기’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각국의 재판제도와 법원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영국 판사들의 가발 착용에 대한 논란과 같이 각국의 법과 법원 관련 상식들을 읽기자료로 제시하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부 ‘세계의 재판 이야기’에서는 여러 가지 판결들을 소개하여 세계 각국의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미스타드 판결, 드레퓔스 판결, 브라운 판결 등 역사적인 판결들뿐만 아니라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과 같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세계의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상식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법과 법원, 재판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필진 일동

CONTENTS



Chapter 1

세계의 법과 법원 이야기

1. 영국의 법과 법원	11
2. 미국의 법과 법원	16
3. 프랑스의 법과 법원	23
4. 독일의 법과 법원	29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1. 우리는 노예가 아닌 사람, 아미스타드 판결(미국)	37
2. 행동하는 지식인의 용기 있는 외침, 드레퓔스 판결(프랑스)	40
3. 분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브라운 판결(미국)	43
4. 피고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미란다 판결(미국)	45
5.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그루터 판결(미국)	48
6.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미국)	50
7. '잊힐 권리'는 존재하는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유럽)	52
8. 디젤차의 고향,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다(독일)	54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4



세 계 의 법 원 과

재 판 이 야 기

Chapter 1



세계의 법과 법원 이야기

1. 영국의 법과 법원
2. 미국의 법과 법원
3. 프랑스의 법과 법원
4. 독일의 법과 법원



영국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일찌감치 확립시킨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그나 카르타의 인신보호권 조항은 향후 전 세계의 인권보호제도 및 사법제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근 영국은 대대적 개혁을 통해 대법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를 아시나요?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영어로는 ‘대헌장(Great Charter)’이라고도 부르는 이 문서는 1215년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존 왕으로 하여금 자유인의 권리를 공언하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국왕의 의지도 법에 구속될 수 있음을 승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서구 법치주의 전통의 원천이 되었고 영국은 물론 전 세계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문서입니다. “모든 자유인은 그와 신분이 같은 사람들의 합법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인신보호권(right of habeas corpus) 조항은 값진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향한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은 이후 영국의 권리청원(1628년)이나 인신보호법(1679년)뿐만 아니라 미국의 권리장전(1789년)과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 안에 마그나 카르타의 인신보호권 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28년 승인된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은 실제로 국왕의 의지를 법에 구속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을 상대로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법정을 소유하고 왕의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만든 사람이 영국

국왕이기에, 국왕에 의한 권리 침해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이라는 관행이 생겨났습니다. 청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국왕 자신이 왕의 법정 가운데 어느 한 곳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정의를 행하도록” 주문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판단 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국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별도의 구제 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권리청원을 통한 우회적인 구제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10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유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수립한 영국이지만, 영국의 대법원은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2005년 제정된 헌정개혁법에 따라 2009년 10월 대법원이 창설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영국에 대법원이 생기기 전에 대법원 기능은 누가 수행해 온 걸까요? 영국은 특유의 귀족제



영국 대법원 청사

도를 가진 나라인데요. 그동안은 귀족들로 구성된 의회의 상원(House of Lords)에서 ‘법률 귀족(Law Lords)’이라 불리는 상원의원 12명이 하급심 법원에서 올라온 사건들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역할을 담당했답니다. 원래 상원의 주된 기능은 물론 양원제 의회의 구성 부문으로서 담당하는 입법 기능이지만, 상원 내에 특별히 ‘상고 위원회’를 두어 재판기능 또한 담당하게 했었습니다.

이처럼 의회에서, 그것도 귀족들로 구성된 상원이 최고 법원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법부로서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2009년부터는 대법원이 별도로 창설되었고 12명의 대법관이 최고 법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상고 위원회를 구성하던 12명의 상원 상임법관이 초대 대법관을 겸하게 되었고, 초대 대법원장은 최선임 상원 상임법관이 맡게 되었습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후에 임명될 대법관들은 상원 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 법원의 구성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으로서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재판기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재판기관은 2009년 새롭게 설립된 대법원으로 통일합니다.

하급심으로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 고등법원(High Court), 형사법원(Crown Court), 구역법원(County Court),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소(Tribunals) 등이 일정한 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관 임명 시 상원 수석법관의 조언에 따라 수상이 추천하고 여왕이 임명하거나(상원 상임법관, 항소법원판사), 상원 수석법관의 조언을 받아 여왕이 임명하는(고등법원판사, 순회판사, 기록원) 등 법관을 임명하는 데 상원 수석법관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헌법개혁법에 따라 오늘날에는 법관인사위원회가 법관의 임명절차를 주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영국 대법원 문양

법적 문제에 대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으로 오메가(Ω) 형태의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무늬 안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국화인 장미, 엉겅퀴, 삼색이 어우러져 영국 전역을 관할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발(Wig)을 착용하는 영국 판사들

영화 속 법정 장면에서 판사가 곱슬곱슬한 모양의 가발을 쓴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영국에서는 판사 등 법조인이 말총으로 만들어진 가발을 쓰는데요. 이것은 중세시대부터 시작되어 수백 년을 이어온 영국의 전통적인 법정 의상(court dress)이라고 합니다. 가발은 대부분 흰색인데요. 고대 로마시대부터 가부장적인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었던 흰 머리와 흰 수염의 이미지가 가발에 반영된 것이지요.



판사들이 착용하는 가발(wig)

영어권에서는 법관을 은유적으로 표현할때 'in wig and g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얀 가발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입니다. 법조인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원고나 피고가 재판 내용이나 판결에 앙심을 품고 보복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발을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가발을 착용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낸다는 상징성도 가발을 쓴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2년 6월 22일 귀족원에서는 판사들이 가발을 계속 착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가발 착용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이지요.

가발 착용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첫째, 가발과 가운데 법조인이 재판에 참여할 때 개인적인 인격과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인격과 이익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 둘째, 가발 착용이 법조인의 연령, 성별, 인종으로 인한 편견과 차이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 셋째, 형식화된 복장과 가발이 법조인의 외관을 바꾸기 때문에 이들이 보통 복장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첫째,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일반인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는 점, 둘째, 판사 또는 변호사에게 개인의 인격과 분리된 역할을 지나치게 요구한 나머지 이들이 재판에서 비인간적이거나 고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셋째, 착용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발이 너무 무겁고 고가라는 점(가발 한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 넷째, 가발 착용은 법조계의 보수성과 권위성을 보여주는 시대착오적 의상으로 현대사회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2007년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사재판을 할 때 판사가 가발을 착용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판사들이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헌법의 제정을 통해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엄격히 독립시키고,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일련의 헌법 개정작업과 연방대법원의 적극적 헌법 해석을 통해 사법심사제도라는 실효적인 권력 통제의 수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 제정의 주체는 국민! We the People...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3개 주의 대부분은 각 주의 헌법을 먼저 제정했습니다. 연방헌법은 13개 주들이 연합하여 미합중국이라는 하나의 연방 국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비로소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개의 독립 국가들 간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헌법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 당사자가 계약서 하단에 서명을 하듯이,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헌



미국 연방헌법 초안(일부)

법 회의 의장 겸 버지니아 주의 대표였던 조지 워싱턴의 서명을 필두로 하여, 헌법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각 주 대표들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기본적인 국가 권력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보유하고 행사토록 하며,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인 의회 또한 헌법에 구속된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명확히 선언됩니다. 또한 헌법 제정의 주체가 결국 국민이라는 점도 헌법 전문에 명기되었습니다. “We the People”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미국 연방헌법은 이렇게 인류의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명시한 희망의 문서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장전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조항들은 미국 연방헌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미처 헌법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발의된 제1차 수정헌법을 통해 이른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불리는 10개의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특히 사법권과 관련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이때 헌법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도 정당한 법



미국 권리장전 초안

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 헌법의 여러 규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무슨 무슨 권리를 보장한다고 일일이 적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덕분에 다양한 권리에 대한 온갖 종류의 침해를 모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권리장전 중 사법권 관련 조항

수정 제4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5조(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7조(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8조(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출처 : 미국 수정 헌법 전문(全文) (미국 개황, 2014, 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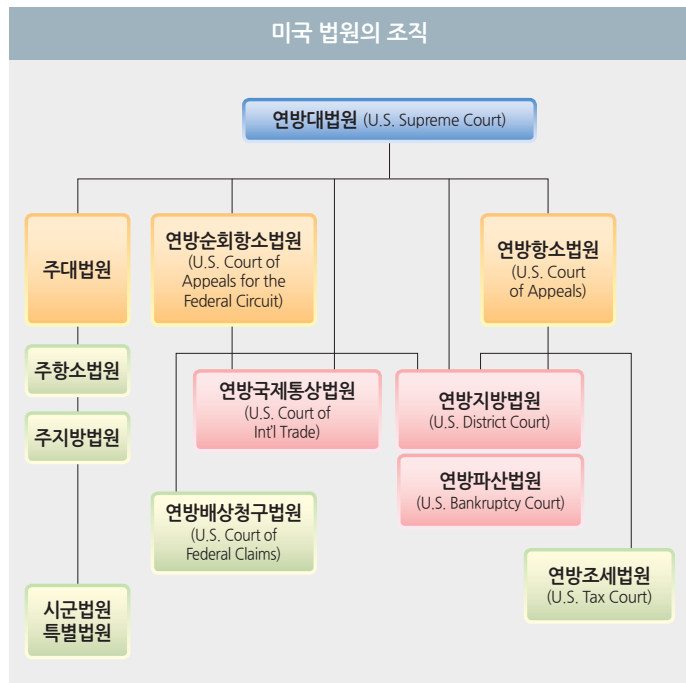
연방헌법 제3조 제1절은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연방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과 연방의회가 수시로 제정하여 설치하는 하급법원(Inferior Court)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1789년 사법조직법(Judicial Act)을 제정하여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조직 및 하급법원으로서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원을 헌법법원(Constitutional Court)이라 하는데,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지방법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편, 연방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에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군인을 통제할 목적의 군사법원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방헌법 제3조 이외에 다른 연방헌법에 의한 입법권에 의하여 연방의회가 설립한 연방법원을 입법법원(Legislative Court)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최고 재판기관은 연방대법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8인 등 9인으로 구성되며, 전원 합의에 의해 심리합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한 사건과 각 주 대법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장

13개의 별 밑으로 리본을 물고 있는 흰머리 수리(미국의 국조(國鳥))가 있고, 리본에는 '여럿이 하나되어(EPLURIBUS UNUM)'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13개 주가 강한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 한다는 이념을 나타냅니다.



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이 심판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미국의 각 주는 고유한 헌법 및 법령에 따라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미국이 독립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왔고 따라서 주마다 법원의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는 연방법원의 사법제도와 유사한 3심제(주지방법원-주항소법원-주대법원)를 채택하고 있지만, 텔라웨어, 메인,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주 등과 같이 2심제(주지방법원-주대법원)를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미국 법원 법관 선거

법관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구요?

미국의 법관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연방법원의 판사는 임명제로, 자격에 제한은 없지만 관행상 법률가가 판사로 임명됩니다. 결원이 생긴 연방법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후보를 지명하여 상원에 통지하는데, 상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판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법원의 판사 선출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주법원 판사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주에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고, 소수의 주에서는 주의회의 동의하에 주지사가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에서 선거에 의해 법관을 선출하는 것은 법관들이 주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므로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를 통한 법관 선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법관 선거운동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 당사자로 나타나서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도 있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보다는 주민의 정서와 사회적 여론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주에서 판사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불만 제기 등을 통해 진행되는 법관탄핵제도와 법관징계위원회가 존재하고, 일부 주에서는 주민소환제에 의해서 판사를 퇴임시킬 수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와는 선출뿐 아니라 퇴임까지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임명방법, 임기, 연방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 임명방식

법원 종류	임명방법	임기	대법원장/법원장
연방대법원 (U.S. Supreme Court)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종신직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	"	65세 미만의 법관 가운데 최선임자가 되며, 임기는 최장 7년, 70세까지만 법원장직 유지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	"	"
연방국제거래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	대통령 임명(70세가 제한)
연방청구법원 (U.S. Court of Federal Claims)	"	15년	"
연방조세법원 (U.S. Tax Court)	"	"	법관 중 호선
연방파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연방항소법원 임명	14년	연방지방법원 임명

미국 주대법원 판사의 선출방법과 임기

선출방법	해당하는 주(임기)
일반 선거(nonpartisan election)에 의해 선출하는 주	Georgia(6년), Idaho(6년), Kentucky(8년), Louisiana(10년), Michigan(8년), Minnesota(6년), Mississippi(8년), Montana(8년), Nevada(6년), North Dakota(10년), Ohio(6년), Oklahoma(6년), Oregon(6년), South Dakota(8년), Washington(6년), Wisconsin(10년)
정당 참여 선거(partisan election)에 의해 선출하는 주	Alabama(6년), Arkansas(8년), Illinois(10년), New Mexico(8년), North Carolina(8년), Pennsylvania(10년), Tennessee(8년), Texas(6년), West Virginia(12년)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	California(12년), Maine(7년)
법관지명위원회(Judicial Nomination Commission)의 지명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	Alaska(10년), Arizona(6년), Colorado(10년), Florida(6년), Indiana(최초 2년, 선거에 의한 재임명시 10년), Iowa(8년), Kansas(6년), Missouri(12년), Nebraska(6년), New York(14년), Rhode Island(종신), Wyoming(8년)
법관지명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주지사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주	Delaware(12년), Hawaii(10년), Maryland(10년), Utah(최초 3년, 재임명시 10년), Vermont(6년)
법관지명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주지사가 주지사 자문위원회(Governor's Council)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주	Massachusetts(70세까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	New Jersey(7년)
행정위원회(Executive Council)의 승인을 얻어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	New Hampshire(70세까지)
법관지명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주지사가 추천하면 의회가 임명하는 주	Connecticut(8년)
의회가 선출하는 주	South Carolina(10년), Virginia(12년)
법관지명위원회 지명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주	Washington D.C.(15년)

미국 헌법 속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그리스 신전처럼 여러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연방 대법원 건물의 정면에는 '법아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3조(사법부)

제1절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2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국 법률과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수정 제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 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또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1항>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건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손(Corruption of Blood) ¹⁾ 이나, 재산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출처 : 미국 헌법 전문(全文) (미국 개황, 2014, 외교부)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중범죄인이 사권(私權) 박탈로 인해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상속보유유증권(遺贈權)을 잃는 것: 187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을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모든 헌정 질서의 기본이 국민의 권리 보장과 국가 권력의 분립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드레퓔스 사건과 같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통해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89년 8월 26일 제헌의회가 채택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간단히 ‘프랑스 인권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언에는 저항권이나 인신보호권과 더불어 자의적 명령이 아닌 법에 의해 소환·체포될 경우 시민이 준수해야 할 순응·무저항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권, 정당한 법 그리고 시민의 준법성 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세 축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나 무시나 경멸이 공공의 재난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으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인간이 지닌 빼앗길 수 없고 신성한 자연권을 엄숙히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즉 그 목적은 이 선언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항상 제시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지 언제나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보다 더 존중되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향후에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확실한 원칙에 입각해서 제기됨으로써 체제가 유지되고 만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회는 절대적 존재 앞에서 그의 가호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막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상으로 평등하므로, 자신의 품성이나 능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명예를 동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위와 직무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7조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자의적인 명령을 간청하거나 선통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에 의거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든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처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설사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글을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제13조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조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유로이 승인하고, 그것의 용도를 확인하고, 조세 부과율과 조세의 산출 방식과 징수 방법과 조세의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지 못한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 해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 전과 후, 재판제도의 변화



중세봉건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각 봉건영주의 영지에 설치된 영주재판소에 속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교회재판소도 존재하여 양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적 종속관계의 지배를 받는 영주재판소에 비하여 교회재판소의 재판이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여겨졌고, 또 교회재판소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완비된 소송제도를 채용하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재판권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는 재판기관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여러 개의 왕궁 직속재판소 외에도 영주재판소, 결혼이나 신분문제를 관할하는 교회재판소가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의 대상에 따라 전문화된 상사재판소, 해사재판소, 그리고 특별한 행정 사건을 관할하는 행정재판기관이 존재하는 등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법원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법원으로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할 지경인데다가, 얹히고 설킨 다양한 법원 사이에서 대여섯

번이나 상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니 재판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재판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90년 8월, 법률에 따라 권력분립, 법 앞의 평등, 재판의 무상, 2심제도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법제도가 창설되었고, 오늘날의 지방법원, 소법원, 근린법원의 전신이 되는 재판기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재판제도(l'Ordre Judiciaire)와 개인 대 공권력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재판제도(l'Ordre Administratif)로 이원화된 재판제도가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법원도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최고 법원인 사법법원과 국사원(Conseil d'Etat)이 최고 법원인 행정법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 청사



프랑스 행정법원의 최고법원인 국사원 청사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프랑스에서는 사법재판제도와 행정재판제도로 재판제도가 이분되어 있고, 재판기관도 파기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법원과 국사원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법원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법법원 및 행정법원과 완전히 별도의 조직인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법(la Justice)’ 개념 속에 일반 사법재판 외에 행정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헌법평의회도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사법기관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경력 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e de Magistrature: ENM)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2년여간의 사법관 시보 기간을 거쳐서 법관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임관 후에는 행정관료 같이 조직 내에서 경력을 중심으로 승진하며 대부분의 판사가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판사·검사의 상호 전관이 자유롭고 법원과 검찰의 조직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법관은 판사와 검사 모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헌법평의회 청사

프랑스 법원의 조직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독일의 법과 법원



독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나치의 등장에 따른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라는 아픔을 겪으며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수(多數)라는 명목으로 유린하고 정당한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를 법의 외관을 띠기만 하면 무조건 적용해 버리는 맹목성으로 파괴한 나치의 경험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 바이마르 헌법



독일은 수백 개의 작은 정치 단위로 나누어 존속해 오다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독일 전역에 걸쳐 적용될 사법제도 마련에 분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빌헬름 2세 황제가 제1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게 되고, 패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면서 제국은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독일은 전통적인 군주제를 폐지하고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공화제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출범한 것이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비운의 국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표지

초기부터 전후배상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고, 아직 익숙지 못한 정당 정치는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1920년대 초반 화폐 가치가 폭락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1929년 찾아온 세계 대공황 속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나치 정권이 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값진 결과물도 남겼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공화국 체제를 수립하고, 보통선거제와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는 등 전례 없이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 현대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선구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헌법은 1945년 나치가 몰락한 이후 제정된 서독 기본법(Grundgesetz, 1949년)의 밑거름이 되었고, 서독 기본법은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의 헌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도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구요?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왼쪽의 문장과 오른쪽의 문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이고, 오른쪽의 문장은 바이마르 헌법 제1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1조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초안 작업에 참여한 유진오는 바이마르 헌법의 문장을 따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독일 헌법의 제1조는 다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나치 정권의 출현과 세계 대전에서의 패전,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반성 속에서 독일 헌법의 첫 조항은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제국이 성립된 이후 독일의 최고 법원은 제국법원(Reichsgericht)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독 기본법 제정 이후 제국법원은 비로소 폐지되고, 새로운 최고 법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기본법 제92조는 독일의 사법조직에 대해 “사법권은 법관에게 위임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기본법에서 정한 연방법원, 각 주의 법원을 통하여 행사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 및 주 법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 연방기관이나 주 사이의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의 사건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에 관해서는 연방 일반법원(Bundesgerichtshof)이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영역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최고 법원을 따로 설치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독일에는 무려 5개나 되는 최고 법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권은 각 분야에 따라 연방일반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등 5개의 연방최고법원이 관장합니다. 다만 독일의 연방법원은 각 주에 그 하급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 5개 재판 분야의 최고법원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5개 재판 분야의 재판 통일을 기하기 위해 연방최고법원 사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청사



독일 연방일반법원 청사



독일 연방재정법원 청사



독일 연방노동법원 청사



독일 연방행정법원 청사



독일 연방사회법원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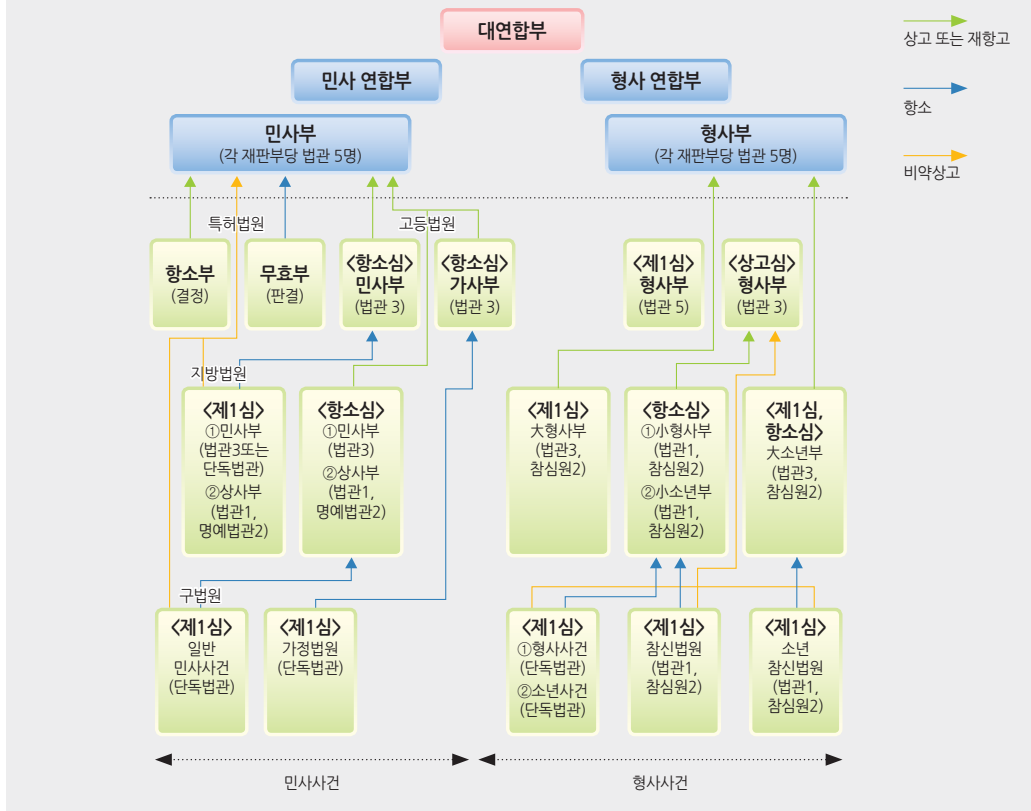
공동재판부(Gemeinsamer Senat der obersten Gerichtshöfe)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각 재판부가 동일한 법률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 해석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 연합부, 형사사건 연합부를 구성하고,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연합부가 구성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독일 법원의 조직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4



세 계 의 법 원 과

재 판 이 야 기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1. 우리는 노예가 아닌 사람, 아미스타드 판결(미국)
2. 행동하는 지식인의 용기 있는 외침, 드레퓔스 판결(프랑스)
3. 분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브라운 판결(미국)
4. 피고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미란다 판결(미국)
5.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그루터 판결(미국)
6.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미국)
7. '잊힐 권리'는 존재하는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유럽)
8. 디젤차의 고향,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다(독일)

우리는 노예가 아닌 사람, 아미스타드 판결(미국)

United States v. The Amistad, 40 U.S. 518 (1841)

01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같은 소설을 보면 노예제도 하에서 흑인이 사고파는 물건처럼 취급되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그것의 법제도화는 수많은 역사의 장면 속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얻어낸 결실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둘러싼 일련의 법률적·정치적 투쟁,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미스타드 사건입니다.

1839년 이른 봄 서아프리카 해안 시에라리온의 노예 수용소로 납치된 53명의 아프리카 인들은 노예선에 실려 대서양 건너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스페인 노예 상인 2명에게 팔려 6월 27일 스페인 범선 ‘아미스타드호’에 실린 채 아바나 항구를 출발했고, 배고픔과 채찍질을 견디다 못한 노예들은 7월 2일 선상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호를 장악합니다. 그들은 백인 노예 상인 2명(루이즈, 몬테즈)만 살려두고 선원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항해기술이 없었던 그들은 살려둔 백인 2명에게 키를 맡겼고, 아프리카로 가는 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백인들은 낮에는 아프리카를 향해 동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밤이 되면 방향을 바꿔 북아메리카 해안을 이탈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두 달 뒤 북쪽 코네티컷 해안에서 미 해군 함대에 의해 발견됩니다. 8월 27일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은 결국 살인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는 1839년 9월 18일 하트퍼드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리카인들의 석방신청, 살인에 대한 형사사건, 화물과 ‘인간화물’을 둘러싼 재산분쟁, 해난 구조 보상금 청구사건, 재판관할권 문제, 1795년 스페인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른 행정부의 처리문제 등 수개의 복잡한 법률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심리 닷새째, 판사는 재판관할권 등과 관련하여 순회법원이 아닌 연방지방법원이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결

2

Chapter



세계의
재판 이야기

국 사건은 11월까지 연기됩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1840년 1월 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840년 1월 연방지방법원(1심)은 아프리카인이 자유인이므로 정부 감독 아래 아프리카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국내외적 갈등을 낳았고, 홀러버드 검사는 포사이드 국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합니다. 연방항소법원(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미국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결국 1841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에서의 최종심이



존 퀸시 아담스의 모습

열리게 됩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한 셈이지요. 재판은 행정부 대표로 길핀 법무장관의 변론, 아프리카인들의 변호사로서 로저 볼드윈의 변론, 존 퀸시 아담스 전 대통령(미국 제6대 대통령)의 변론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인이 자유인인가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정부와 집행부, 사법부의 관계문제나 조약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의 다른 논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아프리카인들은 노예가 아니라 납치된 자유인이며 따라서 미국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흑인들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지요. 아미스타드호 판결 이후 아프리카인들은 자유인이 되어 아프리카로 귀향하였고, 미국은 1865년 승인된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 미국영토에서 노예제도를 공식 철폐합니다. 200년에 걸친 끔찍한 노예제도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지요. 또한 판결이후 40년이 지난 1884년에 이르러 스페인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아미스타드 재판은 노예제도의 잔인성과 부당성을 고발하고 노예제도를 미국정치의 쟁점 중심에 옮겨놓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촉발된 노예제 문제는 남부와 북부 간에 심각한 국론 분열을 야기했고 20년 뒤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의와 도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고, 사법부는 도덕적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덕분에 이 재판은 초기 미국사회에 ‘절차적 정의’와 ‘도덕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적 신념'이 중요함을 강조한 역사적인 판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변론과정을 통해 다루어진 수많은 여타의 법적 쟁점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많은 법적·사회정치적인 사안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를 위해 변호에 나서는 전직 대통령의 존재와 살아 있는 권력을 넘을 수 있었던 법원. 이렇듯 이 사건은 오늘에까지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재판으로 남아있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의 용기 있는 외침, 드레퓔스 판결(프랑스)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불의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행동하는 지식인’을 칭송하지만, 사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드레퓔스 재판은 부정의에 맞서 낸 목소리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위대한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1894년 10월 프랑스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포병대위 드레퓔스는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시 독일군에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패배가 내부의 반역행위 때문이라 결론짓고 그



드레퓔스의 모습

패전의 책임을 물을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군의 정보가 독일로 유출되는 증거가 된 ‘명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세서의 끝에 서명된 ‘D’라는 이니셜이 단서가 되어, 드레퓔스는 일순간 간첩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하지만 명세서 내용에는 분명 필자 자신이 ‘곧 작전에 나간다’고 적혀있었고 당시 수습참모였던 드레퓔스는 이미 작전 불참가의 통보를 받은 상태로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의 필적이 드레퓔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혐의의 표면상 유일한 이유였으나, 당시 반유대인주의가 팽배해 있던 상황 속에서 사실상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드레퓔스는 체포되었고, 1894년 12월 19일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드레퓔스는 단호히 무죄임을 호소했으나 결국 반역죄가 인정되어 프랑스로부터 추방, 종신유페

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드레퓔스는 불명에 퇴역식을 치르고, 1895년 2월 악마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훨씬 지난 후, 군부에서는 진범이 드레퓔스가 아닌 에스테라지 소령이라는 확증을 얻게 되지만 군 수뇌부는 진상 발표를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드레퓔스의 가족들은 1897년 11월 진범인 헝가리 태생의 에스테라지 소령을 고발했지만, 군부는 연일 조작된 증거들을 흘렸고, 형식적인 신문과 재판을 거쳐 에스테라지를 무죄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발표된 직후 소설가인 에밀 졸라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의 논설 『나는 고발한다(J'Accuse)』를 1898년 1월 13일자 《오롤》지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드레퓔스 사건은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됩니다.

그 공개장은 드레퓔스에 대한 간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술하며, 관련된 자들의 실명을 열거하여 그들에 대한 준열한 고발로 끝납니다. 그리고 졸라는 “나의 불타는 항의는 내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 내가 법정으로 끌려간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청천백일하에서 나를 심문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단호히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와 명예를 걸고 드레퓔스의 결백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전체가 ‘정의 · 진실 ·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드레퓔스파(재심파)와 ‘군의 명예와 국가 질서’를 내세우는 반드레퓔스파(반재심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졸라와 《오롤》지의 발행인은 결국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증거조작 사실들이 밝혀지고 명세서의 진짜 작성자가 에스테라지 임이 밝혀져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1899년 9월에 열린 재심 군법회의는 드레퓔스에게 재차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1899년 9월 19일 드레퓔스는 대통령의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드레퓔스의 재심청구에 따라 1906년 7월 12일, 최종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렌 군법회의의 첫 재판의 유죄판결을 오판이라고 파기하고, 드레퓔스와 에밀졸라의 판결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든 유죄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무죄 확인을 위한 12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드레퓔스는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 후 승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재심파의 승리로 끝난 이 사건은 프랑스 공화정의 기반을 다지고, 좌파 세력의 결속을 촉진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 한 시대와 사회를 뒤흔든, 그 역사의 물결 한 가운데 법정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용기 있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을 장으로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분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브라운 판결(미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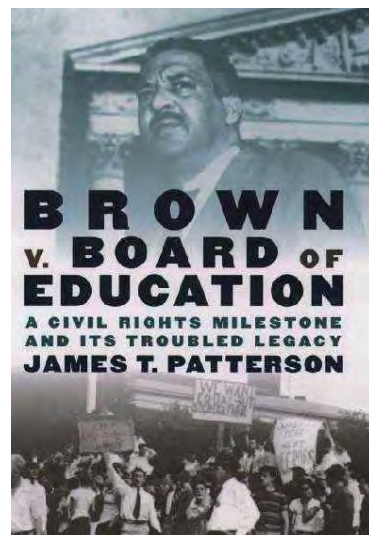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83 (1954)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합니다. 그리고 연방헌법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평등이념을 바탕으로 건설된 미국사회는 인종차별 및 흑백분리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정치적·사회적으로 흑인을 인간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1857년 노예제도 합헌 판결 이후 근 100년 만인 1954년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을 위헌으로 판결한 브라운 판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중 가장 훌륭한 명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도 폐지를 담고 있고, 수정헌법 제14조는 해방된 노예들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했으며, 제15조는 피부색을 이유로 한 투표권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법적·사회적으로 흑백분리 정책이 전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더욱이 1896년 플레시 판결[Plessy v. Ferguson]에서 연방대법원은 ‘분리되었지만 동등하다(separate but equal)’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흑백분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행사도,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흑백분리 자체가 백인이 우월하고 흑인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인종차별이 아니며, 단지 흑인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플레시 판결의 입장이 브라운 판결 전까지 굳건한 선례로 유지되게 됩니다.

1951년 미국 캔자스 주 토피카에 살던 여덟 살짜리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는 섬너 초등학교를 놔두고 왜 기차길을 건너 한참을 걸어야 하는 학



브라운 사건을 다룬 책의 표지

2

Chapter



세계의
재판 이야기

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딸을 섬너 초등학교로 전학시키려 했지만 교장은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브라운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3년여를 끈 끝에 1954년 5월 17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20세기 후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받는 역사적 판결을 받아냅니다.

브라운 사건에서 워렌 연방대법원장이 이끈 당시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백분리정책은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1896년 플레시 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워렌 대법원장은 사회학자들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인종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열등감을 심어주고 정서적 상처를 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설명합니다. 결국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흑백분리의 위헌성을 먼저 발표하고, 브라운 판결 1년 후인 1955년 연방대법원은 흑백차별 철폐추진을 위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브라운 판결 이후 흑백통합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시도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라운 판결로 인해 전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브라운 판결은 선례를 중시하는 미국법원의 전통 속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천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양심의 상징이자 인권의 보루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준 명판결입니다.



■ 브라운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결정을 보도한 뉴욕타임즈 신문

피고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미란다 판결(미국)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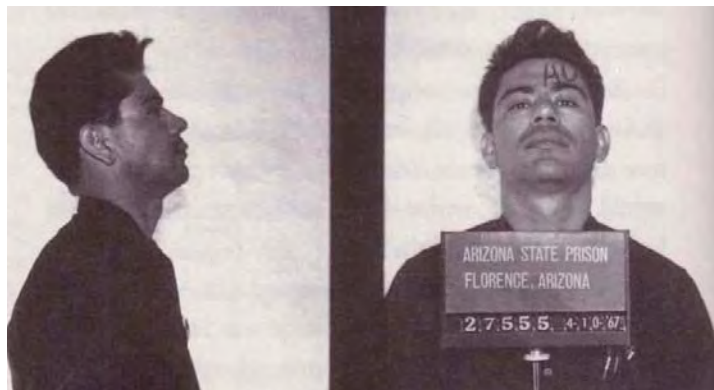
Miranda v. Arizona, 384 U.S.436 (1966)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법정 관련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직전에 주문을 외우듯 “당신은~”라고 읊어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원칙이 형사절차상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성립되게 된 배경에는 1966년 미란다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미란다’는 바로 그 사건의 피의자 이름입니다.

1963년 3월 미국 아리조나 주의 피닉스 시경찰은 18세 소녀를 납치 강간한 혐의로 어네스토 미란다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자백과 범행자백 자술서를 썼습니다. 자술서 하단에는 미란다가 자백이 경찰의 협박이나 형량경감의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신의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법적권리에 대해 미란다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미란다 본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자백진술서는 배심원 평결의 결정적 증거가 되어 미란다는 중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미란다는 주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습니다. 상고청원의 이유는 즉, 자신은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미란다는 머그샷

2

Chapter



세계의
재판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수정헌법 제5조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기에 본 판결은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기에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미란다의 실체적 혐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유죄선언의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중 제4, 5, 6, 7, 8조는 흔히 권리장전(Bills of Rights)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와 비슷하게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리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 절차가 민주사회의 기둥이라는 인식 하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불공정한 재판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미란다의 상고심이 열리기 전까지 미국 법원은 경찰의 심문과정에 피의자의 묵비권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권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법원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는 전체적인 심문상황이 강압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법적 관행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비록 경찰이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한 것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미란다가 상고할 당시 연방대법원은 1958년 크루커 판결, 1964년 마시아 판결, 말로이 판결, 그리고 에스코베도 판결 등을 통해 형사피의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점차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받은 자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찰이 혐의자에게 묵비권 행사권을 고지해 주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일선 수사관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미란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변호사 접근권이 침해되었기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비록 한 표 차이로 승소한 것이지만 미란다 판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한 판결 중 백미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가장 신랄하게 비판받고 광범위하게 분석된 판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판결을 이끈 워렌 대법원장은 미란다 판결이 미국의 법제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이미 오랫동안 실행되어 오던 원칙을 명확히 할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리고 그는 설사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밀폐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벌어지는 경찰의 구금심문은 심리적 가혹행위일 수 있으며, 이는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고 결론내리며, 수사기관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까지 상세히 제시합니다. 판결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서들은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체포나 심문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란다 경고문

'미란다 카드' 내용	
카드 앞면	* 우리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A.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C. 당신은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D.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E.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드 뒷면	* 피의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 1.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2. 당신이 한 말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습니까? 4.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6. 당신은 지금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까? 혹은 우리가 질문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당신과 함께 배석시키고 싶습니까? 7. 아무런 강요나 두려움 없이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그리고 어떤 협박이나 보상받을 약속 없이 우리의 질문에 답할 용의가 있습니까?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그루터 판결(미국)

Grutter v. Bollinger, 539 U.S. 306 (2003)

05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미국에는 소수 인종으로 대표되는 소외 계층이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소수자 보호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여러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고등 교육 기관들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지원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바바라 그루터라는 백인 여성은 이러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미시간 대학교 총장 불린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루터는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교칙이 미국의 다수 인종인 백인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주장하였고, 미시간 대학교 당국은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이 공공의 이해가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미시간 주 지방법원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적법한 것으로 결론 지었고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003년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미시간 대학교의 신입생 선발과정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합헌의 입장에 선 산드라 D. 오키퍼 대법관은 인종적 배경에 근거해서 특정 집단의 일정 인원을 해당 인종으로 채우려고 임계치에 달하는 소수 인종 출신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지만 학교 당국은 인종 간의 상호이해와 인종적 편견 철폐 등 인종적 다양성을 생산하는 교육적 이득을 제시하여 정당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당국이 입학 심사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제한적으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한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의 침해라고까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측이 인종뿐 아니라 지원자의 학부 성적 및 로스쿨 입학 테스트 점수는 물론 지원자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의 개인적 지원 동기, 추천서, 지원자의 로스쿨 생활과 다양성에 기여할 방안을 서술한 에세이 등을 모두 고려하였기 때문에 단지 인종과 같은 한두 가지 제한된 항목에 기반하여 선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고, 가까운 장래에 인종 요소를 심사 항목에서 제외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정당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존재합니다. 억지로 짜 맞춘 다양성은 현실을 왜곡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이 오히려 소수 인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수 인종 출신 엘리트들에 대한 편견을 키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성의 삶과 태아의 생명,

06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미국)

Roe v. Wade, 410 U.S. 113 (1973)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부여받는 것일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엄마 뱃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을 부여받는 것일까요? 생명 기원의 시점을 언제로 설정하는가는 낙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임부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사실상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 제인 로우라는 여성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인 로우라는 이름은 신상 보호를 위해 사용된 가명입니다. 제인 로우는 남편과의 이혼 뒤 세 번째 임신을 하면서 낙태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의 텍사스 주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외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법률이 모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상대가 된 검사 웨이드와 텍사스 주 정부는 사생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이 임부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텍사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1973년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제인 로우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블랙먼 대법원장은 임신한 여성에게 어느 시점까지는 낙태의 권리가 있다고 보면서 임신 초기 3개월 이전까지의 낙태 결정은 전적으로 임부의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주정부가 임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헌법이 허용하는 사생활 보호의 적용 기준을 변형시키고 확장하는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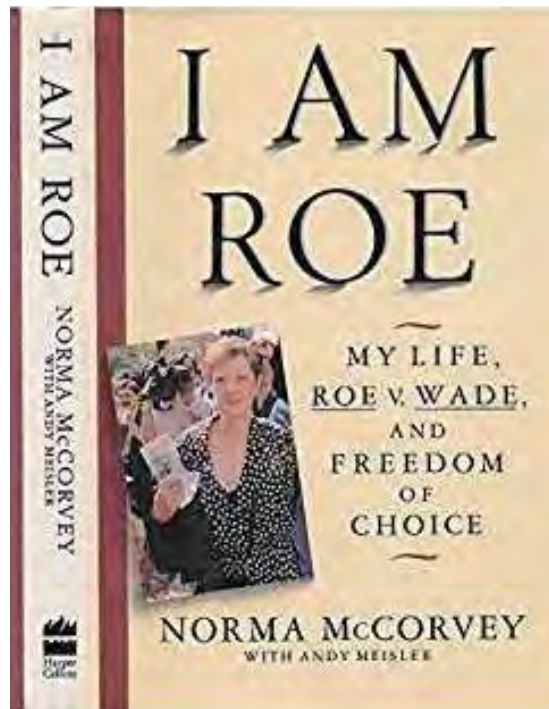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생활 보호는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는 생활,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개인의 자율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의 결과 낙태가 허용되었지만 정작 주인공 제인 로우는 낙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려서 이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자신은 낙태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낙태의 합법화에 공헌하게 된 그녀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낙태 반대 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로우입니다(I Am Roe)』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서 제인 로우라는 가명을 썼던 노마 매크코비(Norma McCorvey)가 소송 경험을 담아 쓴 책



'잊힐 권리'는 존재하는가? 유럽 사법재판소(ECJ) 판결(유럽)

Google Spain v. 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2014]

한 번 인터넷상에 올라간 글이나 사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계속 온라인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떨까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9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가 스페인 신문 라벵가디아(La Vanguardia)에 1998년 실린 자신의 부채 및 재산 강제매각 기사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10년도 더 지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EPD,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를 통해 자신의 기사를 삭제할 것을 신문사와 구글에 청구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검색창에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이 빗 때문에 집을 내놓았던 일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나오는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 계속 검색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EPD는 신문사에 관한 부분은 언론자유에 관한 사항임을 들어 거부하였고, 구글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기사 일부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서 해당 기사 링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기사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예비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 웹사이트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보주체는 정보가 검색정보에 포함되어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법적으로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보다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 가운데 10대 시절 사진, 기업 문서, 범죄 전과 등의 법적 정보, 부당한 댓글 등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 난 지 3일 만에 1,000여 건의 정보 삭제 요청이 구글에 몰렸다고 합니다. 아동성범죄 전과자와 경력 세탁을 원하는 국회의원, 환자들로부터 악평을 받는 의사 등이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했고, 구글이 만든 개인정보 삭제 요청 웹사이트에는 개설 첫날부터 1만 2,00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이후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판결에 서는 잊힐 권리가 다른 권리(직업선택·영업의 자유 및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 등)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대중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이나 유명인 또는 범죄자 등이 잊힐 권리를 무분별하게 행사하면 지우고 싶은 과거를 세탁하는데 잊힐 권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디젤차의 고향,

08



디젤차 운행을 금지하다(독일)

BVerwG 7 C 26.16, BVerwG 7 C 30.17 [2018]

Chapter 2
세계의 재판 이야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의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디젤차(경유를 연료로 움직이는 엔진을 단 자동차)가 처음 개발되어 디젤차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와 뒤셀도르프 시는 독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힙니다. 유럽 기준치를 넘는 날이 일 년 중 60일 가까이 됩니다. 이에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느낀 환경단체 DUH(Deutschen Umwelthilfe)가 시 당국을 상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에서만 1만 3,000명이 디젤 차량의 가스로 조기 사망하고 있는데 시 당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환경단체들이 두 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시를 관할하는 주정부 두 곳이 과도한 규제라며 항소했지만, 2018년 2월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 연방행정법원에서도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행정법원은 디젤차를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빠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행정법원은 디젤 차량 소유주들이 운행 금지에 대한 보상이나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을 당국에 요구할 수 없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제4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²⁾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차의 판매를 금지해 왔었습니다. 독일에 등록된 1,500만 대가 넘는 디젤 차량 중 600만 대는 이미 유로 6 배기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15년 이전에 생산되어 운행하고 있는 디젤차 900만 대의 운행을 금지할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젤차는 유럽에서 팔리는 승용차의 50%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는데요. 독일의 판결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파리와 로마는 2024년부터, 마드리드와 아테네 시는 2025년부터 모든 디젤차의 도심운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디젤차 규제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유럽연합(EU)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유럽연합은 질소산화물(NOx)과 분진(PM)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하며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를 '유로-X'라 총칭합니다. 1992년 일반 승용차 및 경트럭을 대상으로 유로 1이 처음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 2009년부터는 유로 5를 적용해 왔습니다. 유로 6은 2013년에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유로 5(2.0kWh)의 1/5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기 전에 제작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4**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발 행 일	1판 1쇄	2019. 10.
	1판 2쇄	2020. 08.
	1판 3쇄	2021. 12.

집 필 진	연 구 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성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곽한영(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지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자	김경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이수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전진현(신반포중학교 교사)
		황선영(서창고등학교 교사)

발 행 처	법원행정처
	T) 02.3480.1262
	F) 02.593.2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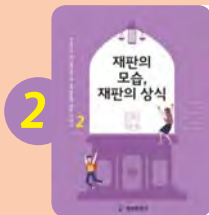
디자인/인쇄	(주)홍디자인 02.464.5167
인 쇄	(주)마이컴피앤씨 02.2273.6153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여러 사건과 인물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법제도의 영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법과 사법제도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사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법을 적용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를 재판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비롯해 재판의 판단 원칙, 종류, 절차 등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재판 이야기가 쏙쏙 이해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판례란 법을 통해 해결한 여러 사건의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갈등을 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는지 알아봅시다. 책에서 소개한 판례의 의미를 친구와 함께 토론했다 보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세질 것입니다.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고유의 법을 만들어 정의를 구현해 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만국 공통일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법과 법원, 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봅시다.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집, 학교 어디서든 우리는 법과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권의 보장과 법', '일상 생활과 법', '청소년 생활과 법'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만든 법교육 교재입니다. 대법원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위 책자의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